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나경원
윤상현 · 김용태 · 김승수
김태규 · 김상훈 · 박형수
이상희 · 서일준 · 강선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,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, 규제특례,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).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산촌혁신특구의 지정 등)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촌혁신특구(이하 “혁신특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혁신특구의 지정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3(조세 감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재산세,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25조의4(혁신특구 내 규제특례) 혁신특구 내에서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제25조의5(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)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특구 내에 산촌 특화 직무 교육, 창업 및 경영컨설팅

지원,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6(이전기업에 대한 지원) 국가는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5조의2(산촌혁신특구의 지정 등) ① 산림청장은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촌혁신특구(이하 “혁신특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혁신특구의 지정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25조의3(조세 감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재산세,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25조의4(혁신특구 내 규제특례) 혁신특구 내에서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</u> <u>제25조의5(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)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특구 내에 산촌 특화 직무 교육,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,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산촌창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25조의6(이전기업에 대한 지원)</u> <u>국가는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/u>
--	---